

SEC HARBOR 시스템 및 해산/청산 실무 가이드라인

서원희 실장 / 필브릿지
April 17, 2026

66 목 차

□ SEC HARBOR (Hierarchical and Applicable Relations and Beneficial Ownership Registry) System

💡 HARBOR 는 실제 소유자 (Beneficial Ownership) 정보를 제출하고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간소화 하고,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 하고자 만든 SEC 시스템

□ 법인 해산/청산 관련

💡 청산 및 해산의 법적 정의 및 각 기관 청산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

➤ *SEC HARBOR SYSTEM*

❖ BACKGROUND (도입 배경) 및 목적

SEC Memorandum Circular No.15 Series of 2025 (2025. 12. 22일 발효)
“Beneficial Ownership Disclosure Rule of 2026”

- 국제 기준 강화
-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
- 페이퍼 컴퍼니 및 차명 구조 악용 증가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
-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(기존 GIS 기반으로 정보의 한계)

📌 실질적 소유자(Beneficial Ownership)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→ HARBOR 도입



➤ SEC HARBOR SYSTEM

❖ 적용 대상 및 규제 목적

- 모든 Domestic Stock Corporation/Non-stock Corporation ,Partnerships
- Foreign Corporation (Branch Office, 연락사무소, ROHQ 등)
- One Person Corporation (OPC)

📌 주주, 이사/임원 (Directors/Officers), Nominee 등 Beneficial Owner를 조사하여 Dummy 구조 차단, Nominee 구조 투명화

❖ Beneficial Ownership 구분에 따른 핵심 개념

- Beneficial Owner (B/O) 기준
 - ✓ 20% 이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보유자
 - ✓ Control 기준(의사결정권, 경제적 이익, 지배력)에 의한 실제 지배자

📌 20% 이상의 지분 보유자 및 Control 기준에 의해 A~I 까지 구분하여 선택, 다수의 B/O 및 단일 B/O의 다수 Category 선택 가능

➤ SEC HARBOR SYSTEM

❖ Nominee (명의상 주주 및 이사) 지정 가능

- B/O 구분 Category G에 의해 명의상 주주 및 이사를 지정한 경우 실 소유자 공개 의무 있음
 - *G. Natural Person(s) who actually own or control the reporting entity through nominee shareholders or nominee directors acting for or on behalf of such natural persons.*

❖ Nominee vs. Dummy

- Nominee
 - 실질적 권리자를 대신하여 명의상 주주 또는 이사로 등재되는 합법적 대리 구조
 -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, 실질적 소유자 공개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허용 가능
 - 일반적으로 Nominee Agreement 등 계약을 통해 권리/의무를 명확히 설정
 - SEC 공시 의무 대상
 - Dummy
 - 형식상 제 3자를 내세워 실제 지배자 또는 이익 귀속자를 숨기는 불법 구조
 - 외국인 지분 제한 회피 또는 실질적 이익 은폐 목적의 경우 허용되지 않음
 - Anti-Dummy Law 위반 소지
 - B/O 미공개, 허위신고 등 추가 규제 리스크 발생 가능
-

➤ SEC HARBOR SYSTEM

❖ B/O 신고 시점 및 방법

1. 제출 시점

- 신규 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 시/ GIS (Annual/Special) 제출 시
- 모든 기업 최소 1번은 필요하며 , 이후 B/O 변경 기준 7일 이내

2. 제출 방법

- HARBOR 시스템

3. 제출 내용

- B/O 정보 (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연락처, 이메일 주소, TIN, 취득일 등)
- Nominee/Principal 정보. Ownership Structure

4. 추가 구비 서류

- Nominee Agreement, Declaration of Trust, Stock Transfer Book

✦ **Dividend Rule (배당 규정)** :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만 배당 지급
Agreement 에 배당 관련 내용 포함

✦ 2026 버전부터 GIS 에서 BO 페이지가 삭제 되어, 변경시만 HARBOR 시스템 통해 신고



➤ SEC HARBOR SYSTEM


❖ HARBOR 시스템 B/O 신고 방법

HARBOR 시스템에 B/O로 신고 된 주주, 이사/임원, Nominee 는 개인 E-secure 계정필요 (400 페소) - **2년 유효**

- 개인 ESECURE 계정 생성 후 Credentialing 진행 (개인정보 및 이메일 주소 입력)
- Credentialing 진행 시 본인 신분증 필요 (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용)
- 신분증 업로드 → 본인 인증 사진 촬영 → Credentialing 완료

❖ 미 신고 시 Penalties (법인 벌금)

➤ Stock Corporation

- 해당 년도 재무제표의 **이익 잉여금 (처분/미처분 포함) 기준**
 - 50만 페소 미만 시 (최소): **5만 페소 (1차 위반)~50만 페소 (4차 위반)**
 - 50만 페소~5M 페소: 최소 벌금의 2배
 - 5M~10M 페소: 최소 벌금의 3배
 - 10M 페소 이상: 최소 벌금의 4배 (**20만페소~200만페소**)
-
- 

➤ SEC HARBOR SYSTEM

➤ Non-Stock Corporation

- 해당 년도 재무제표의 **Fund Balance 기준**
- 50만 페소 미만 시 (최소): 2만 5천 (1차 위반)~25만 페소 (4차 위반)
- 50만~5M 페소: 최소 벌금의 2배
- 5M~10M 페소: 최소 벌금의 3배
- 10M 페소 이상: 최소 벌금의 4배 (10만페소~100만페소)

➤ 기타 벌금

- 1일 지연 당 1,000 페소
- 지연 벌금은 2M 페소를 초과하지 않음

❖ 미신고 시 Penalties (개인 벌금)

➤ BO 미신고 사유가 Directors/Trustees and Officers의 주의 의무 부재로 인한 경우

- 법인의 이사, 수탁자 및/또는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BO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, 수탁자 및/또는 임원에게 벌금 부과
 - 50,000페소 (1차)~1,000,000 페소 (4차)
 - 단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, 최대 1M 페소의 벌금과 5년간 어떠한 법인의 이사, 수탁자 및 임원 직위 불가
-

➤ SEC HARBOR SYSTEM

❖ 내부 고발자 신고제 및 포상제 마련

- SEC에서는 실소유자 정보 공시 및 식별에 있어 내부 고발자의 중요성 인지
-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접수된 정보는 SEC 조사에 의해 최종 결정 고지
- 정부 감사 규정에 의해 내부고발자 보상 규정

💡 B/O 신고 규정에 따른 HARBOR 시스템의 핵심

- BO 신고가 GIS 부속이 아닌 독립 규제 체계로 전환됨
 - 기업 뿐만 아니라 임원 개인책임, 내부고발, 시정명령 등 집행체계 강화
 - 단순 신고가 아니라 관리 실패 시 회사, 경영진 모두 제재 (자격박탈·해산 가능)
 - BO는 명의가 아닌 통제·경제적 이익 기준 → nominee로 회피 어려움
 - 내부 절차·정책 부재 자체도 위반으로 간주됨
-

➤ *SEC HARBOR SYSTEM*

❖ 기업 실무 대응 방안

- B/O 관리 체계 구축
- 최종 실소유자 정확한 식별 및 보수적인 판단을 통해 구조 명확화
- B/O 정보의 수집, 검토, 기록, 업데이트 등의 내부절차와 정책 구축
- B/O 관련 문서 구비 (Nominee Agreement 등)
- 내부 고발자에 대한 주의

📌 HARBOR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가동 및 구체적인 Implementation에 따른 업데이트 필요



➤ 기업 해산/ 청산 실무 가이드


❖ 개정 상법(RA-11232 Revised Corporation Code)에 의한 해산/청산 개요

1. 법인 해산 (Dissolution) – 존속 목적 종료를 위한 법률 행위, 영업활동 금지, 청산 목적으로만 활동 가능

➤ 자발적 해산 (Voluntary Dissolution)

- 채권자에 영향이 없는 경우 (Voluntary Dissolution Where No Creditors are Affected)
- 채권자에 영향이 있는 경우 (Voluntary Dissolution Where Creditors are Affected; Procedure and Contents of Petition)
- 정관상 기업 존속 기관 만료로 인한 해산

➤ 비자발적 해산 (Involuntary Dissolution)

- 사업 미 운영 (연속 5년 동안)
 - 사기/불법행위로 인한 법원의 해산 명령 시
 - 사기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판결 시
-
- 

▶ 기업 해산/ 청산 실무 가이드

❖ 개정 상법(RA-11232 Revised Corporation Code)에 의한 해산/청산 개요

2. 법인 청산 (Corporation Liquidation) – 해산 된 법인의 잔존 법인격을 이용한 정리

- 해산 후에도 최대 3년간 법인 존속 (청산 목적) – 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(BSP 결정)
- 이 기간 동안 자산 정리, 채무변제, 잔여 자산 분배 가능
- 설립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영업 활동 금지
- 필요 시 신탁으로 자산 이전하여 청산 가능
- 미 청구 자산은 국가 귀속

➤ 기업 해산/ 청산 실무 가이드

❖ 법인 해산/청산 실무


➤ 자발적 해산 절차 (Voluntary Dissolution)

- 채권자에 영향이 없는 경우 법인 해산 절차,

1. 고용해지 및 노동청 신고 - 최소 30일 전 사전 고지

- 고용해지 고지 (해산 사유 포함)
- 직원 Final Pay 지급 (급여, 13개월, 미사용 유급 휴가, Separation Pay 등)
- 노동청 신고 (해고 사유, 해고자 정보, 해고 예정일, Separation Pay 지급 계획 포함)

2. 3대 보험 및 자체 계약 정리

- 직원 고용 해지 신고 및 3대 보험 Clearance 확보
 - 임대계약, 유틸리티 계약 해지
-
- 

➤ 기업 해산/ 청산 실무 가이드

❖ 법인 해산/청산 실무

3. 시청 영업 허가서 말소 (2~3개월 소요)

- **최근 5년** 재무제표 및 영업허가서 제출을 통한 미납 지방세 과세
- 본점 외 **영업소에서 납부한 지방세 납부 증빙** 및 영업소 **말소증 필요**
- 영업 매출 외 **기타 매출에 대한 과세 (페널티 과세)**
- 일부 시청 수기 장부 (Books of Account) 및 Sales Invoice 제출 요함
- 영업소 납부 증빙 없을 시, 이중과세 리스크 있음
- 사무실 실사를 통한 비 거주 확인 및 재고자산 현황 및 소각 확인

📌 프로젝트 사이트 및 영업소 Business Tax 과세, 납부 증빙 및 말소증 확보 중요

📌 일부 지방 정부의 경우, 노동청 Case 없음 및 3대 보험 말소 증명 요구하기도 함



➤ 기업 해산/청산 실무 가이드

❖ 법인 해산/청산 실무

4. 국세청 Tax Clearance 확보 (약 2년 이상 소요)

- **최근 3년** 재무제표 제출 (세무조사를 통한 과세 진행)
- 국세청 등록증, ATP, 사용/미사용 Invoice Booklet 제출 및 소각
- 수기장부 (Books of Account) 제출 (분실 및 미 업데이트 시 패널티 부과)
- 법인설립 초기부터 Open Case (미신고 및 미 제출건) 조사
- **시청 영업 허가서 말소증** 제출 필요

📌 Open Case 조사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, 과거 신고 자료 미비 시 과세 대상이 되며, 필리핀 관공서 전산 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시간 소요 많음



▶ 기업 해산/ 청산 실무 가이드

❖ 법인 해산/청산 실무

5. SEC 해산 등기 확보 (약 5~6개월)

- 법인 설립 시 현재까지 Compliance 사항 확인 및 페널티 부과
 - Annual GIS, AFS, Security Deposit, MC28, B/O 신고 등
 - 사전 확인 및 Compliance 필요
 - TIN 비활성화 및 Tax Clearance 발급 후에도 SEC에는 재무제표 제출 필요
- SEC Verify를 위한 제출서류 약 30여개 List 서류 제출 요함
- **Tax Clearance 원본 제출 포함**
- 최근 재무제표상 Outstanding Liabilities 상세 내역 및 채무 상환 증빙 제출 필요

📌 자발적 해산 절차 (Voluntary Dissolution)- **해산 증명서 발급 시 효력**



▶ 기업 해산/ 청산 실무 가이드

❖ 법인 해산/청산 실무

▶ 채권자에 영향이 있는 경우

- 주주와 **이사회 2/3 이상 찬성**
- Verified Petition 제출
- 해산사유, 의결을 위한 통지 방식, 의결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이사회 결의서
- 모든 채권자 명단
- SEC에서 Petition 승인 후 채권자 이의 제기 공고 명령 (최소 30일~최대 60일)
- 일간지 채권자 공고 **주 1회, 3주 연속 공고**
- SEC 심리 및 제기된 이의 검토
- 필요 시 채권 회수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인 임명


▶ 채권자에 영향이 없는 경우 (일반적인 신청 형태)

- 주주와 **이사회 과반수** 이상 찬성
 - 최소 20일 전 법인 해산 **주주 총회 일정 (시간, 장소, 목적 등) 신문공고 1회**
-
- 

➤ 기업 해산/청산 실무 가이드

❖ 법인 해산/청산 실무

□ 법인 해산/청산의 주요 쟁점

- ✓ Exit 전략에 맞춘 해산 신청 검토 필요
 - ✓ 각 기관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및 기관별 모니터링 필요
 - ✓ 주요 서명권자 (Director, 임원 , Corporate Secretary , Resident Agent 등) 유지, 관리 필요
 - ✓ 채무 관계 사전 정리 필요
 - ✓ 청산 재무제표산 자산, 부채 소멸을 통해 청산 절차 간소화
-
- 

감사합니다

PHILBRIDGE